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41호      2010. 2. 3.(수)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7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31호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35호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38호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39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45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49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51호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7호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오류지구 풍림아이원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프리마건설 대표 김명수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4블록 1,3로트
  - 나. 대지면적 : 10,017.6m<sup>2</sup>
  - 다. 연 면 적 : 31,994.08m<sup>2</sup>
  - 라. 사 업 비 : 75,704,035,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8 ~ 20층 3개동 207세대
4. 사업기간 : 2007.11 ~ 2011.03
5.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변경사항 없음 ”
6. 변경사항
  - 기계설비 변경
    - 에어컨 냉매배관 공사 추가
    - 배관, 부속, 장비류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31호

##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토지소유자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0.1.29.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0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석남완충녹지 조성(시설물 등 포함)
5. 공고기간 : 2010. 1. 29 ~ 2010. 2. 16
6. 공고장소 : 게시판, 시군구보, 홈페이지
7. 공고사항 : 토지수용재결서정본
8. 의견서제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2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위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대상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소유자	주소	비고
1	인천 서구 석남동	222-29 222-30 222-31 222-49 222-50	토지	차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6-7 2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인천직할시 고시 제1993-128호(1993. 09. 28.)로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되고, 인천직할시 공고 제1994-365호(1994. 12. 28.)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49호(2010. 01. 12.)로 공사완료 공고된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 구 도시개발과[☎(032)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0년 01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3번지 일원
3.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시행기간 : 1994. 12. 28 ~ 2010. 03. 27
5. 환지처분 면적 : 343,489.9㎡
6. 환지처분 내용 : 각 필지별 신지번, 지목, 면적, 지적도면 확정 및 청산금 결정 등
7. 기타사항
  - 본 환지처분 공고로 인하여 종전토지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으로 변경되며, 변경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의 공부발급은 일정 기일이 소요됩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리할 것이나, 청산금 징수(납부)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 즉시 정리됩니다.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별도로 통지할 것이고, 교부금은 본인 청구에 의거 지급되며, 우리 구 자금사정에 따라 교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38호

##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소재지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01-1	

가. 접수기간 : 2010. 01. 29. - 2010. 02. 05.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지역경제과에서 작성)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1. 29.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39호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흥부책	인천 서구 가정동 500-31	박득을	일반	2010.01.29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1.29 - 2010.02.05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1.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45호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태양식당	인천 서구 원창동 382-66	이명주	일반	2010.02.01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2. 01 - 2010. 02. 08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2.0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49호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미래지성	인천 서구 원창동 439	최은선	임시	2010.02.02
호남슈퍼	인천 서구 가좌동 410-26	이선우	일반	2010.02.02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2. 02 - 2010. 02. 09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2.02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51호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는 신속중인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운영에 부족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에 대한 정의

나.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

다. 제3조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위치에 관한 사항

라. 제4조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기능에 관한 사항

마. 제5조~제8조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제9조~제11조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사. 제12조~제16조 개관 및 휴관, 관람금지,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아. 제17조 전시품 및 시설물의 파손·오손·망실 등 변상조치 사항

#### 3. 의견제출

이 전부 개정조례(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 제출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
  - 전화번호 : 032-560-4341
  - FAX : 032-560-4349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이하 “사료관”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실내전시실을 갖춘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 이라 함은 사료관이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사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09-3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녹청자에 대한 조사 · 연구
2. 유물의 보존 및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 연구
3. 국가시책 및 구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4. 도예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사료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료관을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며,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연장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수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사료관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유물구입)** ① 구청장은 본존 및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구입을 완료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도난·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유물임이 판명된 경우
2. 진위여부에 관하여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제10조(유물기증)**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 등을 기증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조건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유물기탁)**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대여·위탁 보관·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사료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휴관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사료관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5.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3조(관람료)**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관람시간)** ①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료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애완동물을 대동한 채 관람하고자 하는 자
3. 인화물질 등 화재 위험물 소지자 및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밖에 구청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사료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 흡연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7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오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은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으로 본다.